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3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천준호·박성준·전용기  
양부남·박선원·김동아  
이주희·정태호·김문수  
김승원·안태준·박균택  
김남근·이기현·서영교  
이용우·한병도·박홍배  
조인철·송재봉·이건태  
이상식·김현정·박용갑  
백승아·김한규·문금주  
이훈기·오세희·김성희  
전진숙 의원(31인)

### 제안이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범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건수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 수사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한 행위, 진술을 유도·회유하는 방식의 조사, 협조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사건 축소,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정과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등을 증언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및 수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에 의해 형성되었을 정황도 확인되었음.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하여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

나아가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한국 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

정'으로 바꾸는 등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 수사였으며 감사원이 피감 공무원들을 인권침해성 강압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한 수사와 왜곡된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속에 관련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되는 등 기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 아울러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수사 및 기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 권한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한편,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직적 은폐 및 축소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회

복하고,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공소권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9조).

- 마.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따라야 함(안제8조)
- 바.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 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 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0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수사정보 유출 및 이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 등을 통한 공소권(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오남용 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일체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 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마.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바.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 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 차.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 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다수 언론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

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병합 사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형법」 제15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모해위증죄·허위진술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본문 및 각목의 사건 포함한다. 이하 제2조제1항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 특검법”이라 한다)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2. 제9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 다만,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그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직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는 위임한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휘·감독한다.

④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또는 그 수사·공소 사무를 승계한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

사에게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⑥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또는 그 수사·공소 사무를 승계한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70명 이내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

사와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소유지 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특별검사의 위임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특별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단,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한다)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이첩된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과 관련하여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

한 검사가 지휘에 불응할 경우 그 검사를 공소수행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등 공소유지를 담당할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⑦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이 경우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특별검사보의 권한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파견검사 또는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사건 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속관할) 이 법에 따른 수사단계에서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3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12조의 영장 심사를 전담할 법관 1명 이상을 보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보임절차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다.

제14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③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④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2항의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9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21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 제2조제1항 사건의 수사·공소 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제2조제1항 사건이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4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

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을 제21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수사기록 등에 대하여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4대 특검법상 이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할 각 의무를 면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 확보를 위하여 대검찰청(또는 그 수사·공소 사무를 승계한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등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또는 그 수사·공소 사무를 승계한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기관의 장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수사기록 등을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인계할 의무가 있는 때에도, 인계 대상에서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거나 열람·복사를 허용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사기록 등과 관련된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적 효력)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관한 수사 와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 적용 된다.

제25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1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대검찰청 등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개정으로 대검찰청이 폐지되거나 그 사무가 중대범  
죄수사청, 공소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분리·승계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규정된 부분은 그 사무  
를 승계한 해당 기관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